

본인은 아래 진술이 사실이고 정확하며 (만약 위증일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에 법에 따른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임을 맹세한다.

1. _____ 과(와) _____
은(는) _____ 부로 동거관계를 시작했음을 선언한다.

전체 날짜 기록(예: 2004년 3월 14일)

2. 상기 명명된 사람은 서로 친족 관계가 아니다.
3. 상기 명명된 사람은 서로의 생계에 대해 상호 협의한 의무를 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상기 명명된 사람은 최소 6개월 이상 같은 집에서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였다.
5. 상기 명명된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이 진술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동거인과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6. 두 사람은 18세 이상이며 현재 미혼 상태이다.
7. 동거인 및 동거인의 부양 자녀는 미 연방세법 제152조 하에 직원의 부양 가족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고용주의 계획 하에 동거인 및/또는 동거인의 부양 자녀에게서 받는 보상액은 소득세 공제 및 고용세의 용도로 직원에게 지불되는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8. 무직 상태의 동거인에게는 연방 또는 주법(예: COBRA)에 따라 회사 의료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상액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다.
9. 고용주는 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따라 직원의 동거인을 보살피기 위해 직원 가족 휴가를 승인할 의무가 없다.

날짜: _____, _____

_____	_____
<i>서명</i>	<i>인쇄 또는 자필 이름</i>
_____	_____
<i>서명</i>	<i>인쇄 또는 자필 이름</i>

주 _____, 카운티 _____
일, _____ 본인, _____
이름, 직함(예: "JANE DOE, 공증인")

앞에서 자인하였다 _____
서명인 이름

- 직접 참석 - 또는 - 증서에 서명한 사람이 본인임을 나타내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계약 조항을 이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증서에 서명함으로써 동일한 법적 효력일 발생함을 인정한다.

증인 및 공식 인장.

공증인 서명